

#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2,142,405	14,464,272
일반회계	405,499,383	12,164,981
특별회계	76,643,022	2,299,291
공기업특별회계	67,272,981	2,018,1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301,927	1,239,05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971,054	779,132
기타특별회계	9,370,041	281,1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03,599	66,108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279,912	8,39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662,500	49,87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8,363	60,2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15,667	96,4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228,604천원(일반예비비 4,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88,220천원, 내부유보금 1,140,38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